

 신안산대학교	취창업진로 운영 규정	규정 번호 제정 일자 개정 일자 책임부서/팀·계	2-5-20 2021. 10. 1. 2024.3.20. 대외협력처
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대외협력처 산하 취창업진로팀(이하 “취창업진로”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제2조(업무) 이 취창업진로는 학생들의 취창업 및 진로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취창업 진로사업 계획, 예산 수립 및 운영
2. 취창업 진로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
3.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 및 진로지도
4.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
5. 학생 취·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<2022.03.10. 개정>
6. 취창업진로 역량진단 및 취업컨설팅 운영
7. 취창업진로 동아리 운영
8. 취업처 발굴 및 진로정보 제공
9. 외부 재정지원 취창업 및 진로 사업 수행
10. 취창업진로 운영에 따른 자체평가 및 환류계획 수립
11. 기타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 2 장 기 구

제3조(조직) 취창업진로는 다음의 직제와 기구로 구성한다.

1. 대외협력처장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2. 직원 및 상담사
3. 운영위원회

제4조(대외협력처장) ① 대외협력처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- ② 대외협력처장은 부서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- ③ 대외협력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제5조(직원) ① 취창업진로의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과 상담사를 둔다.

- ② 직원의 임용에 관한 것은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취창업진로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,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

하기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2.3.10., 2023.3.30., 2024.3.20.>

③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④ 위원회는 본교 교직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취창업진로 지도의 기본방침 수립
2. 취창업진로팀과 관련된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심의
3. 취창업진로팀 사업계획수립, 자체평가, 환류계획수립,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
4. 졸업자 취창업현황, 전망파악 및 그 대책 수립
5. 취·창업 및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
6. 기업체·정부기관·사회단체 등 취·창업 및 진로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방안 수립
7. 기업체 인턴과정 개발을 위한 기획
8. 취창업 및 진로지도에 관련된 사항
9. 취창업 및 진로 지원시설에 대한 점검
10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4 장 학생취업지도

제9조(취업전담교수제) 학생취업지도를 위하여 학과별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취업전담교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취업전담교수 구성) 해당학과 교수들의 협의 하에 취업 대상자 및 취업자들을 위한 책임교수를 구성한다.

제11조(취업전담교수 기능) 취업전담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1. 재학생 취업지도
2. 취업처 발굴 및 산학협력활동

제12조(졸업생 취업지원) 취업전담교원은 졸업생에 대한 취업관리 및 미취업자 취업을 위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졸업생 취업지원 기능)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.

1. 졸업생 취업자 관리 지원

2. 졸업생 이직희망자 지도 및 취업처 알선 지원
3. 졸업생 미취업자 취업지도 및 취업처 알선 지원
4. 취업처 발굴 지원

제14조(재정) ① 학생취업지도를 위한 재정은 교비, 국고, 기타 비용으로 충당 한다.
② 지원금은 회의비 및 출장비, 기념품으로 한다.
③ 출장비 기준은 대학 국내외 여비 기준표에 따른다.(단, 안산시는 수도권에 포함한다.)

제 5 장 취창업진로 동아리

제15조(목적) 취창업진로는 취창업진로 준비를 위한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16조(구성 및 등록) ① 취업 및 진로관련 동아리는 취업동아리, 창업관련 동아리는 스타트업동아리로 정의한다. <2022.03.10. 개정>

- ② 동아리 회원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
- ③ 동아리 등록요건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 1. 동아리는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재학생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 2. 설립목적 및 활동이 타 동아리와 중복되지 않고 고유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.
 3. 동아리 구성 시 지도교수(전임교원)를 추대하고 취임승낙서를 받아야 한다.
 4. 동아리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신청서를 대외협력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- ④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1. 동아리 활동으로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 2. 학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학교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

제17조(활동) 동아리 활동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.

1. 취창업진로 교육 활동
2. 교내·외 박람회 및 경진대회 참여
3. 관련 산업체와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참여
4. 각급 기관의 취창업진로 관련 행사 참여
5. 기타 취창업진로 관련 활동

제18조(재정) ① 동아리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교비, 국고, 기타 수익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.
② 동아리 활동시 재정을 지원받을 경우는 동아리 활동계획서, 예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동아리 활동 완료 후에는 동아리 활동보고서, 정산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취창업진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취창업진로는 활동보고서 및 정산서를 점검하여 교내 회계규칙, 법인카드 운영규정, 재정지원 운영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동아리로부터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.

제 6 장 취창업진로 지원시설

제19조(취창업진로 지원시설) 취창업진로 지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20조(커리어라운지, 진로심리상담실)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커리어라운지, 진로심리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2022.03.10. 개정>

1. 취창업진로 정보 검색 및 자료 비치
2. 취업서류 작성 및 인쇄 등 취업서류 준비
3. 모의면접, 이미지메이킹 등 취창업진로 관련 상담
4. 구인 산업체의 방문면접
5. 취창업진로 관련 정보교류 활동
6. 취창업진로 준비생들의 각종 정보탐색 및 인쇄 등을 지원
7. 개인상담, 해석상담, 집단상담 등 심리지원 상담 <2022.03.10. 신설>
8. 기타 취창업진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<2022.03.10. 개정>

제 7 장 재 정

제21 조(재정 및 회계) ① 취창업진로의 재정은 본교 교비 및 기부금과 국비로 충당한다.

② 취창업진로는 전년도 취창업진로활동 및 취창업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환류계획을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.

③ 취창업진로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2 조(예산·결산) 취창업진로의 예산·결산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8 장 평가 및 환류

제23조(평가 및 환류) 취창업진로는 학생의 취창업진로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생 취창업진로 지원 계획 및 매 학년도 부서 운영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프로그램 시행 후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야 한다.

제 9 장 보 칙

제24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01 규정은 2022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01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01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